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9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가. 해당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 병무청훈령 제1864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운영규정 제2조의 3항 “병역명문가 가족” 범위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 변경됨 (2020. 2. 10. 일부개정)

3. 주요내용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3항)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12. 11., 2020. 2. 2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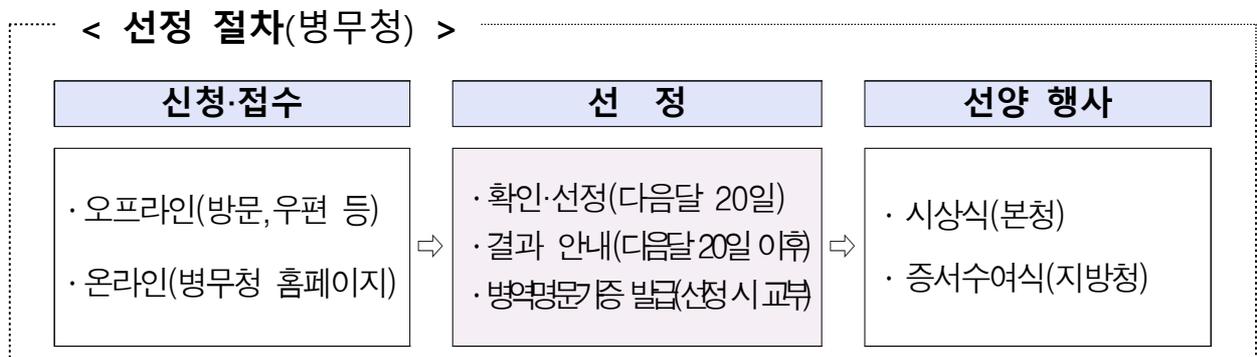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발·관리하고 있는 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한 예우 및 우대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명문가 선정('21. 2월 기준) : 서울시 1,198가문(전국 6,395가문)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전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 17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임.

「병역법」

-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병무청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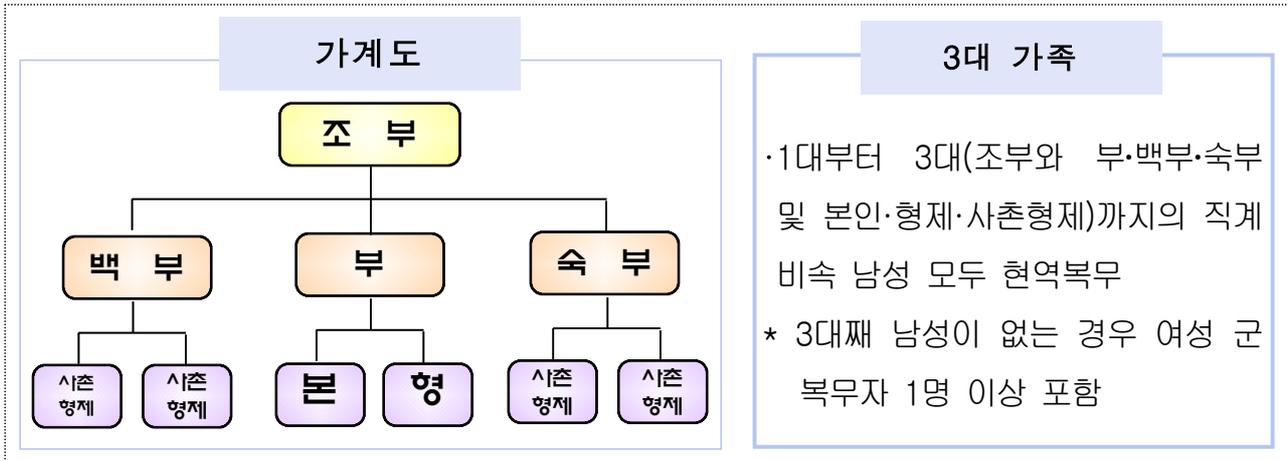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병역명문가 개요

- 병역명문가 :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 집행부는 조례안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병무청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예우대상자의 가족'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 관련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 연혁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2017. 11. 7., 일부개정·시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019. 3. 11., 일부개정·시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020. 9. 10.,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생략)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 -----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3. ----- ----- 부모 ----- -----

○ 법령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안 제 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가족’규정의 개정 사항은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개정(2020.9.10.)된 후 상당한 기간 이를 방치하였는바,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조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표> (2021년 6월 기준) 서울시 병역명문가문 현황

(단위: 가문)

구 분	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가문 수	918	51	46	18	62	35	30	36

구 분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가문 수	16	52	29	28	44	30	31	53	31

구 분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가문 수	31	81	44	55	28	38	16	16	17

※ 21년 6월 기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병역명문가 대상은 1,198가문 5,989명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연월일 : 2023. 4. 6.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 가. 해당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 병무청훈령 제1864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운영규정 제2조의 3항 “병역명문가 가족” 범위가 병역명문가 병역
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 변경됨 (2020.
2. 10.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12. 11., 2020. 2. 2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u>모</u>,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부모</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함

3. 미첨부 사유

-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수혜 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행정7급 이준규 (02-3423-5762)